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7. 3 .

발 의 자 : 이갑선 의원 외 10 인

1. 제 안 이 유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함

2. 주 요 내 용

-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세대로서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안 제3조)
-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에서 대상자 선정 (안 제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 까지 시장에게 통보(안 제8조)

3. 참 고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노인복지법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모·부자복지법 제2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구미시 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2. 등록 장애인세대
3. 모·부자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제8조(대상자 명단 통보) ①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험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의 자료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 고 법 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부자복지법

제2조(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차형자)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illegible]